

차 례

I. 중동 및 베트남 평화협상 사례 연구

II. 평화협정 관련 남북한 제의비교

(1954-1996 현재)

III.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95. 8. 15)

IV. 한·미 공동발표문 (1996. 4. 16)

V. 4자회담 제의관련 북한 및 주요국 반응

I. 중동 및 베트남 평화협상 사례 연구

1. 문제 제기
2. 중동 3자회담 및 평화협정
3. 베트남 4자회담 및 평화협정
4. 해외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 첨부 1.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내용
2. 베트남 평화협정 내용

1. 문제 제기

- 북한이 현행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무력화 시키고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96.4.16)해 놓고 있음.
- 본 보고서는 『4자회담』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교훈을 얻고자 해외의 다자간 평화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최근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다자간 평화회담 개최 또는 평화협정 체결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1973년의 베트남 4자회담 및 평화협정 체결
 - 1979년의 중동 3자회담 및 평화협정 체결
 - 1995년의 보스니아 평화회담
 - 1996년의 중, 러, 카자흐 등 5개국 평화회담
 - 1996년의 북아일랜드 9개정과 평화회담
- 여기서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1979년의 중동 3자회담 및 평화협정 체결과 실패로 귀결된 1973년의 베트남 4자회담 및 평화협정 체결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1995년의 보스니아 평화회담, 1996년의 중,러 등 5개국간 평화 회담, 북아일랜드 평화회담은 아직 성패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사례 연구 대상에서 제외
- 중동 3자회담과 베트남 4자회담은 다같이 평화협정을 합의·체결함으로써 회담 자체는 성공적이었으나, 중동의 경우 평화협정이 준수된 데 반해 베트남의 경우는 평화협정이 준수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중동의 경우는 분쟁 당사국간에 평화 상태 유지가 주목적인데 비해 베트남의 경우는 분쟁당사국간 통일의 문제(민족적 일체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한편, 중동 및 베트남 다자간 협상에는 미국이 관여되어 있는 바 미국은 협상 중개자 및 협상 당사자로서 그 역할이 달랐을 뿐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목적도 달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중동 3자회담과 베트남 4자회담의 배경, 진행과정, 결과 등 협상 사례 전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최될 한반도 4자회담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하는 데 대해 교훈을 얻고자 함.
- 따라서 다자간 회담의 성립과 진행이라는 「하드웨어」(Hardware) 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2. 중동 3자회담 및 평화협정

1) 3자회담 성립 배경

- 1973년 10월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전쟁 발생, 약 10일간의 전쟁으로 패전을 의식하게 된 이집트가 휴전을 요청,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재하에 1973년 11월 이집트-이스라엘간 정전협정 체결
- 정전협정 체결 직후 미국, 소련의 발의로 중동평화회담 개최
 - 일자, 장소 : 1973년 12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 참가자 : 미국, 소련 (공동발의), 이스라엘,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PLO 장관급
 - 결과 : PLO의 대표권 문제로 1개월만에 결렬
- 그 후 약 4년동안 다자간 국제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미국의 중재하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달성

- 정전이후 안정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유엔비상군(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 UNEF) 주둔
 - 유엔비상군은 스웨덴, 가나, 호주, 이란, 인도네시아, 핀란드 로 구성된 4,4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접경지역(시나이 반도) 순찰 임무 수행
-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의 중재로 이집트-이스라엘간 1974년 1월 『시나이 군사력 분리협정(Agreement on Disengagement of Forces); 시나이 협정 I』을 체결
- 우발적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기습 공격 가능성 축소, 조기 경보시간 증가)
 - 시나이 지역의 주둔군 격리, 군사력 및 무기에 대한 제한, 이집트·이스라엘 및 유엔비상군(UNEF)에 의해 시찰, 미국 정찰기에 의해 주기적 사찰
- 이후 두번째 협정을 추진하였으나 철수선과 감시소, 조기경보 시간 확보에 관련된 쌍방간 입장차이로 결렬
- 1975년 9월, 철수선과 감시소 문제 등에 양국간 상호 양보가 이루어져 『시나이 협정Ⅱ』 체결
- 합의된 군사력 준수에 대한 유엔의 감시 이행
 - 당사국 및 미국에 의한 접근용 도로 감시 이행
- 이와같이 정전이후 군사력 분리에 관한 2차례의 협정 체결과 이행 등을 통해 약 4년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치적 신뢰구축, 즉 평화협정 체결을 모색
- 양 정상간에 정치적 평화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지 대두
 - 미국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

○ 이스라엘-이집트간 평화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 (4회)

- 일자, 장소 : 1977년 12월 13일~12월 24일, 이집트 카이로
- 참가자 :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UN (차관급 대표)
- 결과 : 이스라엘, 이집트 정상회담 합의

○ 이스라엘-이집트간 정상회담 개최 (4회)

- 일자, 장소 : 1977년 12월 25일~26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 참가자 : 이스라엘 「베긴」 수상,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 결과 : 양국간 정치위원회, 군사위원회 설치 합의

○ 이스라엘-이집트간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회담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내용
군사위원회	1978.1.11-12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 가마시 국방장관 이스라엘 : 와이즈만 국방상	이스라엘군의 철수문제에 대한 일방적 양해 성립
정치위원회	1978.1.17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집트 : 디안 외무장관 이스라엘 : 카멜 외상 미국 : 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 先협정 체결, 後철군주장 이집트 : 先철군 後협정체결 주장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내용
3개국 외상 회담	1978.7.18-19 (영국 리즈)	이집트 : 다얀 외무장관 이스라엘 : 카멜 외상 미국 : 밴스 국무장관	철군 및 정착촌 문제에서 이견

- 이같은 상황에서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이스라엘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 캠프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담 성사

2) 미국의 적극적 중재

- 미국이 중동평화협상에 적극적 중재 노력을 한 이유는

- 전략적으로 중동 지역내 소련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고 미국의 이익을보호
- 당면하게는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동 평화협상을 카터의 재선에 이용

- 미국은 중동평화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1973년 12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중동 6개국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의 대표들을 미국 워싱턴에 초청하여 2자, 3자 회담을 진행

구 분	일시·장소	참 석 자	내 용
2자 정상회담	1977.12.16-18 (미국 워싱턴)	미국 :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 베긴 수상	이스라엘의 신평화안에 대해 협의 이집트-이스라엘간 정상 회담 개최 협의
2자 정상회담	1978.1.1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 : 사다트 대통령 미국 : 카터 대통령	<중동평화3원칙 발표> PLO의 권리 인정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분쟁 당사국간 관계정상화
2자 정상회담	1978.1.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 칼리드 국왕 미국 : 카터 대통령	
2자 정상회담	1978.1.3 (요르단)	요르단 : 후세인 국왕 미국 : 카터 대통령	
2자 회담	1978.1.20 (이집트 카이로)	미국 : 댄스 국무장관 이집트 : 사다트 대통령	정치위원회 중재
2자 정상회담	1978.2.4-5 (미국 워싱턴)	미국 : 카터 대통령 이집트 : 사다트 대통령	이집트-이스라엘간 직접 협상원칙 선언
2자 회담	1978.3.8 (미국 워싱턴)	미국 :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 와이즈만 국 방상	대이스라엘 안보 공약 재 확인

구 분	일시·장소	참 석 자	내 용
2차 정상회담	1978.3.21-22 (미국 워싱턴)	미국 :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 베긴 수상	중동평화 3원칙 수락 촉구, 이스라엘 거부
2차 회담	1978.4.1-25 (이집트 카이로)	미국 : 아더튼 국무차관보 이집트 : 사다트 대통령	
2차 회담	1978.4.26 (이스라엘 예루살렘)	미국 : 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 다얀 외상	이스라엘, 미국의 대아랍 국가 무기판매 제고 요청
2차 정상회담	1978.5.1-2 (미국 워싱턴)	미국 : 카터 대통령 이스라엘 : 베긴 수상	이스라엘, 미국의 대아랍 국가 무기판매 제고 요청
2차 회담	1978.6.31 (이스라엘 예루살렘)	미국 : 몬데일 부통령 이스라엘 : 베긴 수상	3개국 외상회담 개최 합의
3차외상회담	1978.7.18-19 (영국 리즈)	미국 : 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 다얀 외상 이집트 : 카멜 외무장관	성과없음
2차회담	1978.7.27-28	미국 : 아더튼 국무차관보 * 이스라엘, 이집트 방문	3개국 외상회의 이견 막후 조정
2차 회담	1978.8.6 (이스라엘 예루살렘)	미국 : 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 베긴 수상	캠프 데이비드 3개국 정상회담 합의

구 분	일시·장소	참 석 자	내 용
2자 회담	1978.8.8 (이집트 카이로)	미국 : 벤스 국무장관 이집트 : 사다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3개국 정상회담 합의

3) 3자 정상회담 및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

- 1978년 9월 6일 미국 캠프데이비드(Camp David)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3자 정상회담 개최, 캠프데이비드 협정체결
 - 체결당사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미국은 증인으로서 조인
- 회담일자, 장소 : 1978년 9월 6일~17일(12일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 회담 방식
 - 개최식 : 공동 회담
 - 실질 회담 : 카터가 양국 정상과 개별 회담
- 참가자 : 미국 「카터」 대통령 (중재자 역할),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베긴」 수상
- 협정체결 일자, 장소 : 1978.9.18, 워싱턴 백악관
 - 전세계 TV 중계
- 협정 조약 문서 : 2개

○ 협정 조약 문서 : 2개

- 중동평화원칙 선언문 (요르단 및 가자지구 문제)
- 이스라엘-이집트간 평화협정 체결 원칙 문서

○ 캠프 데이비드 협정 내용

-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점령지로부터 철수
- 요르단강 서안 및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PLO) 잠정 자치정부 수립
- 자치정부 수립의 세부사항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및 팔레스타인 주민대표의 협상으로 결정
- 팔레스타인 잠정자치정부는 5년간 존속하며, 자치정부 수립 후 3년 내에 점령지의 최종지위 결정을 위한 협상개시
- 잠정 자치기간중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평화협정 체결 협상 진행
-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향후 전면적 외교관계 개설

4) 이스라엘-이집트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

- 캠프데이비드협정 체결이후 이스라엘-이집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각료급 3자회담의 진행

구 분	일시·장소	참 석 자	내 용
1차 각료급 3자회담	1978.10.12-22 (미국 워싱턴)	미국 : 뱅스 국무장관 이스라엘 : 다얀 외상, 와이즈만 국방상 이집트 : 카멜 외무장관, 카릴 국방장관	평화협정의 일부쟁점을 제외한 초안 합의 및 공동성명 발표
2차 각료급 3자회담	1978.12.23-24 (벨기에 브뤼셀)	이스라엘 : 다얀 외상 이집트 : 카멜 외무장관 미국 : 뱅스 국무장관	성과없음.
3차 각료급 3자회담	1979.2.22 (미국 워싱턴)	이스라엘 : 다얀 외상 이집트 : 카멜 수상 미국 : 뱅스 국무장관	성과없음.
군사부문 각 료급 3자회담	1979.3.18-19 (미국 워싱턴)	이스라엘 : 와이즈만 국 방상 이집트 : 카릴 국방장관 미국 : 브라운 국방장관	이스라엘군의 시나이반 도 철수시기 등 그동안 쟁점사항에 대부분 합 의, 양국 평화협정의 기 틀 마련

○ 한편 미국은 중동평화협상의 성공적 보장을 위해 중동국가 순방 외교 실시

- 1978년 9월 20일~24일, 밴스 국무장관, 요르단, 사우디, 시리아 방문 : 아랍권 지지 요청
- 1978년 12월 10일~16일, 밴스 국무장관, 이집트, 이스라엘 정상 및 각료급 회의 개최 : 평화협정 내용 조정
- 1979년 2월 10일~18일, 브라운 국방장관, 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 요르단 방문, 안보지원 공약 및 평화협상 설명
- 1979년 3월 2일~4일, 카터 대통령, 이집트 방문 3차례 정상 회담, 이스라엘 방문 4차례 정상회담 개최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타결, 3월 26일 워싱턴서 조인키로 합의
- 1979년 3월 17일~18일 :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 요르단, 사우디 방문 : 평화협정 설명 및 협조 요청

○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체결

- 일자, 장소 : 1979년 3월 2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 참가자 :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베긴」 수상
 - * 미국 「카터」 대통령은 보증인으로서 참가
- TV로 전국 중계하에 조인

○ 평화협정 비준서 교환

- 일자, 장소 : 1979년 4월 25일, 시나이반도내 미군기지
- 참가자 : 이집트, 이스라엘 외무장관

*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 증인으로 참가

5) 평화협정 체결 이후

-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은 양국간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를 마련
- 그러나 이는 이집트-이스라엘 양국간의 평화만을 보장
 - 평화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PLO간 평화는 수차례의 분쟁을 거치며 1993년 9월 제1차 자치협정, 1995년 8월 27일 제2차 자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달성
- 또한 중동지역의 다른 당사국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은 당시 협상 당사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들과의 분쟁은 오랫동안 계속
- 19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는 동안에 미국, 소련, EU의 중재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등이 각각 참가하는 11차례의 쌍무회담(1991.11~1993.9, 워싱턴 개최)과 1차례의 다자회담(1992.1, 모스크바 개최)이 성사
 - 미국과 소련이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고 분쟁 당사국은 회원으로 참여
 - 중동평화협상내에 2개의 위원회를 구성
 - * 제1위원회는 경제위원회로서 참가국의 경제협력을 통해 안보 관계도 상호의존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거양
 - * 제2위원회는 군축위원회로서 지역내 긴장완화, 군비축소, 병력배치 제한지대 및 완충지대 설정하는 역할 담당

- 1992년 5월이후 5개분야(지역안보 및 군축, 경제개발, 난민, 수자원, 환경)별로 각각 중동평화 실무그룹회의를 워싱턴, 모스크바 등 세계 5개국 수도에서 개최
- 이스라엘-요르단간 회담과 평화협정체결 : 1994년 10월
- 이스라엘-시리아간, 이스라엘-레바논간 회담 및 평화협정 체결은 약 14~15년간의 세월이 소요된 지금까지 진행

3. 베트남 4자회담 및 평화협정

1) 4자회담 성립 배경

- 베트남 정전협정 (54년 7월, 월맹군과 프랑스 연합군간)체결 이후에도 월맹의 지휘를 받는 공산 게릴라들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남베트남 지역에서 침략 행위를 계속
 - 이에대해 미국은 공산 게릴라들이 남베트남의 침략(정전협정 위반)에 대항하고자 남부 베트남에 병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반입, 증강
- 1964년 8월, 미국은 북베트남 지역 「통킹」 만을 순찰중인 미 구축함이 월맹 어뢰정의 공격을 받자 월맹의 어뢰정에 대한 공격을 시발로 북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개시

- 이로부터 미국과 월맹 및 공산 게릴라(해방전선)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
- 1965년 4월, 월맹은 미국과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미국에 대해 평화협상을 제의
- 1965년 5월부터 약 3년동안 미국과 월맹간에는 평화협상을 위한 비밀접촉이 진행
 - 일자, 장소 : 1965년 5월 13일 이후 약 3년간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
 - 참가자 : 미국, 월맹의 외무장관
 - 회담형식 : 비밀접촉
 - 결과 : 공전 및 결렬
- 1968년 1월 구정(설)을 틈타 월맹과 해방전선군은 남부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전개, 미 대사관 일부가 점령당하는 등 미국은 군사적 패배를 당함
 -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 지도자들 사이에 군사적 승리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났고 미국내 여론도 반전 분위기로 전환
- 1968년 3월 31일, 미국 존슨 대통령은 '북위 20도 이상지역 전면 폭격중단' 선언과 함께 월맹과 평화협상 의사를 표명
- 1968년 4월 3일, 월맹은 미국과의 회담 개최에 동의함으로써 1968년 5월 31일 미국과 월맹사이에 평화회담 예비회담 개최

○ 미국-월맹간 평화회담 (예비회담)

- 일자, 장소 : 1968년 5월 31일, 프랑스 파리
- 참가자 : 미국, 월맹의 외무장관
- 결과 : 베트남 '4자회담' 개최에 합의

* 미국은 월맹에 대해 '남베트남에서의 군사행동 중지와 남베트남정부의 인정'을 요구, 월맹은 미국에 대해 '북쪽의 무조건 중지'를 주장

* 남베트남 및 해방전선도 함께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 합의

- 남베트남 정부는 해방전선의 참가를 반대하며 4자회담 불참을 선언 하였으나 미국의 강압에 의해 참여

2) 4자회담 진행 경과

- 1969년 새로 출범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에 의해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상군 축소를 추진

- 1969년 1월 25일부터 약 1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 진행(48회)

- 참가자 :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월맹), 민족전선 외무장관
- 결과 : 미군 철수 시기와 남부 베트남의 자결권 문제 등으로 회담은 지지 부진

- 1969년 8월 6일, 미국은 1차로 주월미군 3만 5천명 철수

- 같은날 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남지역에 임시혁명정부를 수립
- 1970년부터 4자회담은 수석대표가 빠지고 차석, 또는 삼석대표가 참가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
- 4자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공전되는 상황속에서 1969년 8월 4일부터 1971년 10월까지 약 2년간 파리에서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월맹의 레득토(나중에 수안 투이) 외무장관 사이에 비밀회담 진행 (12회)
 - 이 비밀회담은 1971년 5월부터 급진전 되어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쌍방간 입장이 상당히 좁혀졌음
 - 그러나 정치문제 즉, 남베트남에서의 선거방식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월맹은 총선거를 주장), 선거관리기구 (미국은 모든 정치세력의 참가를, 월맹은 남베트남, 월맹, 해방전선의 3당 사자만 동일 비율로 참가를 주장) 등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
- 1972년 1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그동안 파리에서 비밀회담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발표하고 2월에는 중국 방문을 통해 월맹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시도
- 그러나 월맹은 이에 대한 반발로 3월 30일 대공세 전개
 - 미국도 4월 6일 즉각 북베트남에 대한 대량 폭격 재개
 - 1972년 연말까지 전투가 계속

- 미국은 1972년 6월에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을 통해 월맹을 설득하려는 국제적 압력 외교를 계속하는 한편, 5월부터는 파리에서 키신저와 레독토간 비밀협상을 재개
- 1972년 10월에 이르르면서 미국-월맹간 비밀협상이 급진전
-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4당사자간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일명 : 월남평화협정 또는 파리평화협정)이 체결
 - 회담에서 소외되어 있던 남베트남 정부는 처음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의해 협정 체결에 참가
 - * 1973년 1월 미국 닉슨대통령은 남베트남 티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베트남이 끝내 평화협정 수락을 거부한다면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월맹과 협정을 맺을 것이며, 그럴 경우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 '그러나 협정에 조인한다면 원조는 계속되고 월맹의 협정 위반 사태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3) 베트남 평화협정의 체결

- 1969년 1월에 시작된 4자회담은 1973년 1월까지 4년동안 예비회담과 미국-월맹간 비밀회담을 포함 총 175회를 진행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성공
 - 그러나 협정과 관련한 4개 의정서는 미국-월맹 양자간 조인

○ 베트남 평화협정 (일명 : 파리평화협정) 체결

- 일자 및 장소 :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 컨벤션센터
- 참가자 : 미국, 월맹, 남베트남, 민족전선 외무장관
- TV로 전 세계에 중계

4) 평화협정 체결 이후

○ 베트남 평화협정 체결후 4당사자와 주변국은 후속 조치로써

- ① 『국제관리위원회』(캐나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헝가리), 『4자 합동군사위원회』(미국, 월맹, 베트남, 해방전선) 구성·발족 (1973.1)
- ② 포로 석방 개시(1973.2)
- ③ 12개국(4개 당사자+관련 8개국)간의 국제회의 개최, 『베트남에 관한 국제회의 의정서』체결(1973.2~3)
- ④ 미군포로 석방 및 미군철수 완료(1973.3) 등 실시

○ 그러나 전쟁종식은 잠시였고 당시 남베트남의 티우정권이 부패와 무능을 극복하지 못하자

- 월맹의 지속적인 군사력을 확충 및 남하 기도
- 월맹 및 민족전선의 평화협정 위반 빈발과 이의 통제 불가능
- 남베트남과 해방전선 사이의 『정치협상회의』의 결렬사태 발생

○ 결국 1973년 10월 남베트남·월맹간 전쟁이 재개

- 전쟁 발발후 미국 행정부는 남베트남에 파병을 추진하였으나 미 의회가 베트남 파병 및 지원을 거부
 -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월맹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졌음.

4. 해외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및 시사점

1) 4자예비회담후 남북당사자간 회담으로 전환, 최종단계에서 4자정상회담 개최가 바람직

○ 중동 평화협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 ① 이집트-이스라엘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UN 4자(대표는 차관급)가 참가하여, 이집트-이스라엘간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
- ② 이집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정치위원회, 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
- ③ 정치위원회 및 군사위원회에서 성과 미미 : 미국은 양국간 조정을 통해 3자정상회담 개최를 도출
- ④ 미국이 중재한 3자정상회담에서 중동평화원칙과 ‘이집트-이스라엘간 평화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 (캠프데이비드 협정)
- ⑤ 양국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회담(대표는 장관급)이 개최되어 핵심 쟁점부문을 남겨둔 채 대부분 타결

- ⑥ 미국은 이집트, 이스라엘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쟁점부분 타결 도출
- ⑦ 3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협정 세부 내용 마무리
- ⑧ 3자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조인 (미국은 보증인으로 서명)
- ⑨ 양국간 비준서 교환 (미국은 보증인으로 참가)

○ 한반도 4자회담에도 이같은 과정을 준용하여

- ① 4자회담 예비회담(차관급)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
- ②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화해공동위, 군사공동위 가동)에 합의
- ③ 화해공동위, 군사공동위에서 남북간 평화협정 논의 및 합의
 - 만일 남북 화해공동위, 군사공동위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혹은 중국)이 별도 중재를 하거나, 3자(또는 4자)가 참여하는 장관급회담에서 이를 논의
 - * 이 경우 미, 중의 중재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 경계
- ④ 4자정상회담에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및 ‘미·중 보장선언’ 채택, 또는 미, 중의 교차 ‘남북 불가침 선언’ 채택

- 4자정상회담 직접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안될 경우, '한반도 평화원칙' 및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원칙'을 우선 4자정상회담이 조인하고,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별도 3자(또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평화협정을 마무리

⑤ 남북간 평화협정 비준서 교환 (미, 중이 보증인으로 참가)

2) 분쟁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평화협상 당사자가 되어야하며, 분쟁당사자의 평화협정 체결 및 준수 의지가 중요

- 중동의 경우, 분쟁당사자인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쌍방 정상들이 나서서 회담을 하는 한편, 양국 공동기구인 정치위원회 및 군사위원회 등을 통해 평화협상을 추진

-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정상은 양국간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노력을 경주

* 특히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은 그의 평화협상제안을 앞두고 120명의 군부 강경파를 숙청하고 협상중에도 외상을 2번이나 교체하는 등 협상의지를 고수하는 한편, 국방상으로 하여금 평화정책 지지 군부성명까지 발표토록 조치

- 베트남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4자회담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월맹간 비밀 협상이었음 : 협상과정에서 분쟁당사자인 월남이 철저히 소외

- 평화협정 체결 당시 월맹의 정치지도자는 미군 철수에 주된

의지가 있었으며, 미국 대통령은 교전상태 우선 중단 및 이 지역에서 명예로운 퇴진에 의지가 있었음

3) 분쟁당사자간 평화협상 기간중(즉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군사 부문 합의와 이에대한 성공적인 검증을 통해 상호 신뢰구축이 필요 : '신뢰구축후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단계적 접근

○ 중동의 경우, 「시나이 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부문 합의를 이루었고, 또한 이 협정 위반시, 우발적 분쟁발생시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

- 아울러 공중정찰 허용, 조기경보체제 설치 등 고도의 기술적인 검증방법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베트남의 경우, 분쟁당사자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혀 이룩되지 않았으며 평화협정 체결 직전까지도 쌍방간 교전상태가 지속

- 평화협정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또 하나의 정전협정에 불과

4) 평화협상의 발의부터 평화협정의 체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 장기적 접근

○ 중동의 경우, 1973년 12월 중동평화회담 발의 이후 1979년 3월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의 체결까지 약 5년 4개월 소요

○ 베트남의 경우, 1969년 1월 평화협상을 위한 미국-월맹간 예비 회담이 시작된이래 1973년 1월 협정체결까지 약 4년 소요

○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에도 4자회담 예비회담의 시작후 평화협정의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

5) 평화협정 내용에 있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협정위반시 제재, 협정준수에 대한 감시 등이 중요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과 베트남 평화협정 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을 살펴보면

- 전쟁상태의 종결 및 평화적 분쟁 해결 원칙
- 불가침 경계선 확정 : 영해, 영공을 포함 상호 영토적 경계 구분
- 상호 무력 위협 및 행사 억제 : 위반시 제재 조치
- 평화보장장치 : 평화유지군 구성, 병력제한지대 설치, 공동기구(공동위원회) 구성
- 다른 협정과 의 관계
- 기존 정전협정의 대체
- 기타 발효조건, 공식 언어 등

* 첨부한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및 '베트남 평화협정' 참조

6) 협정 체결후 협정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및 협정준수에 대한 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는 분쟁당사자 간 힘의 균형이 존재하거나, 제3자 혹은 관련국에 의한 적극적 보장이 수반되어야 가능

- 베트남의 경우, 월남의 티우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협정체결 이후에 평화를 유지시킬 능력을 갖지 못했고 베트남내에서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군사력의 균형이 깨짐

- 또한 월맹의 협정 위반 사태에 대해 『국제관리위원회』, 『4자합동위원회』, 『베트남에 관한 국제회의 의정서』 등 각종 평화보장 기구 및 보장 조약은 무력화 노정

- 이스라엘 및 이집트의 경우, 자국의 힘과 미국의 강력한 보장을 바탕으로 힘의 균형 유지가 가능

-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전후의 우리 정부의 안정성과 남북한간 군사적 세력균형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 주한미군 혹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반도내 군사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역할 수행

7) 평화협상에 참여한 미국의 목표와 역할에 따라 평화협상의 성격과 성패가 결정

- 중동의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소련 세력 견제와 카터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집트-이스라엘간 합의 도출을 위해 상대국 정상과의 회담(16회)을 포함 총 58회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추진

- 미국은 회담을 통한 설득, 중재, 타협안 제시 뿐만 아니라, 협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강은 양면 정책을 통해 압력과 회유를 구사

- * 이스라엘의 경직된 자세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을 겨냥하여, 사우디에 무기판매계획을 발표 및 의회 승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 * 또한 이스라엘이 협상을 수용하는 데 대해서는 향후 3년간 30억불의 차관과 30억불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탱크, 미사일 등 무기구입을 허용
- 베트남의 경우, 미국은 빠른 전쟁종식을 위해 월남내 해방전선(임시혁명정부)을 당사자로 인정하고 월맹군의 월남 잔류도 사실상 인정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
 - 협상 초기에는 미군철수 기간을 협정 체결후 '12개월 이내'로 제시했으나 협상이 계속되면서 '6개월 이내'를 제시, 결국은 '2개월 이내'로 양보

8) 사실상 북한의 국가승인 결과 초래 : 국내외 대북인식 전환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

- 남북 평화협정의 체결과 미, 중의 보장은 사실상 한반도내 2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상호 적대정책의 포기를 의미
- 북한에 대한 정통성 인정 및 보안법 폐지 등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 수정이 수반되어야 함

< 첨부 1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내용

- 명칭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 구성 : 본협정(전문, 9개조), 3개 부속의정서
- 전문 : 1978년 9월 17일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협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동 협정이 이스라엘과 아랍간 평화의 기초이며, 전쟁상태 종결을 통한 전면적 평화 및 분쟁해결의 원칙을 확인
- 1조 : <발효시점>
본 협정의 비준서 교환과 동시 양 당사국간 전쟁상태의 종결과 평화가 확립되며, 시나이반도로부터 이스라엘군대와 민간인을 완전히 철수
시나이반도에 대한 이집트의 주권회복 및 이스라엘군 철수와 동시에 양국간 정상적인 우호관계가 확립
- 2조 : <불가침 경계선>
부속의정서 II의 지도에 표시된 국경선이 불가침 경계선임을 확인하고 쌍방이 영해·영공을 포함하여 서로 영토보전을 존중
- 3조 : <UN헌장, 국제법 원칙 적용, 위반시 제재조치>
유엔헌장과 평화시의 국제관계를 규정한 국제법의 제원칙을 상호 적용, 즉 상호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상호 무력위협이나 행사를 억제하며, 당사국간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상대국 주민 재산에 대한 교전, 적대, 폭력행위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재판에 회부할 것을 보장하며,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부속의정서 III에 기술

- 4조 : <안전보장장치: 유엔군 주둔, 병력제한지대 설치, 공동기구 설치>
양 당사국간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 영내의 병력 제한지대, 유엔군 및 감시요원, 기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안전 보장장치를 포함하여 쌍방합의에 의한 안전보장조치를 확립.
유엔파견단 주둔을 인정하며 동 조약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
- 5조 : <무해통항권>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에 대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888년 콘스탄티노플조약에 의거 수에즈운하 및 지중해의 무해통항권을 인정
- 6조 <본 협정과 UN헌장 및 타조약과의 관계 규정>
본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의무와 기타 다른 의무 사이에 대립이 발생할 경우, 유엔헌장 제103조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한 의무가 구속력을 갖고 이행
- 7조 <조약 적용·해석과정의 분쟁해결 원칙>
본 협정의 적용이나 해석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상 또는 조정·중재에 의해 해결
- 8조 <청원위원회 설치>
양 당사국의 모든 재산권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원위원회를 설치
- 9조 <발효 조건> <1975년 양국간 체결한 정전협정의 대체> <동 협정내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통고> <아랍어, 영어, 히브리어본으로 체결하되 해석상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영문본 우선> 등

< 첨부 2 > 베트남 평화협정 내용

- 명칭 : 월남 전쟁 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
- 구성 : 본협정(전문, 9장, 23조), 4개 의정서
- 전문 : 베트남에 관한 파리 회의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베트남인들의 기본적 국민권리와 월남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월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여러 규정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이행할 것을 다짐
- 제1장 : < 베트남 주권 존중 >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베트남에 관한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
- 제2장 : < 적대행위 종식과 철군에 관한 규정 >
 - 2조 : 휴전일시는 1973.1.27.24:00, 휴전지역은 월남 전역, 미국의 모든 군사활동 중지 및 월맹 영내 부설된 기뢰제거 및 영구 파괴, 적대행위의 종식은 영구적
 - 3조 : 휴전발효 즉시 미군 및 베트남공화국 연합군은 철수계획 시행 시까지 현 위치에 잔류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 적대행위, 테러 및 보복을 금지
 - 4조 :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계속하지 않고 월남의 내정에도 불간섭
 - 5조 :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는 협정 조인후 60일 이내에 철수

6-7조 : 병력, 군사고문 등 인원, 장비·탄약 등의 남베트남 도입을 동결

- 제3장 : < 포로가 된 군사요원 및 외국민간인과 포로, 억류된 베트남 민간인 송환 >
모든 전쟁포로를 60일 이내에 석방
- 제4장 : < 월남 국민의 자결권, 국민회의 설치 >
월남·월맹·해방전선 3당사자간 동일한 비율로서 구성되는 행정 기구인 국민화합평화회의를 총선에 대비한 기구로서 조직·발족
- 제5장 : < 베트남 통일과 남북 베트남 관계 >
베트남의 통일은 서서히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 제6장 : < 종전 관리기구 설치 >
국제통제감시위원회 설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30일 이내에 개최
- 제7장 : < 크메르와 라오스에서 군사활동 금지 >
모든 당사자들은 라오스 및 크메르의 독립, 주권 및 영토의 안전을 존중
- 제8장 : < 미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 >
미국은 월남의 전후복구와 재건을 지원
- 제9장 : < 발효, 언어 >
참가 당사자들의 전권대표 서명으로 발효, 월남어 및 영어로 작성

II. 평화협정 관련 남북한 제의비교

1. 개 황

- 북한은 70년대 초까지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으나 '74. 3부터는 『정전협정 실제 당사자론』을 내세우면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오고 있음.
 - 북한의 입장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해 본다면 남북 평화협정 제의시기('54.6-'74.3), 미·북 평화협정 제의시기('74.3-'84.1), 『3자 회담』 제의시기('84.1-'94.4),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협상 제의시기('94.4- 현재까지) 등 네 시기로 구분
 - * '74. 3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서 미·북 협정 체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당시 베트남전쟁 종결을 위한 파리 정치협상이 공산월맹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데 영향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대남혁명 전략의 수행』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미·북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북한 체제보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하여 70년대 초까지는 평화협정 체결전 즉시철수, 70년대 중반이후 평화협정 체결후 단계적 철수, 최근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한 정전상태 관리를 주장

- 최근 평화협정 관련 북한 주장의 특징은
 - 종전에는 구호성 정치선전 공세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중감위 철수와 군정위 기능중지, DMZ 불인정 등 구체적인 정전체제 무실화조치를 통한 압력을 가해오고 있으며
 - 포괄적인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용어를 사용하면서 평화협정 보다는 정전기구 대체문제를 주된 협상과제로 제시하고
 - 평화협정 체결전 중간조치로 『잠정협정』 체결 및 미·북 군사공동기구를 설치하여 정전상태를 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점임.

- 우리측은 남북간 신뢰구축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해오면서 △신뢰구축 선행 △현정전협정 준수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을 견지해 왔음.
 -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74. 1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75. 10 휴전당사자회의, '79. 7 3당국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회피

- '96. 4 『4자회담』 제의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광범위한 신뢰구축 조치와 『병행토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 * '75. 10 유엔에서 4자회담 성격의 『휴전 당사자회의』를 제의한 적이 있으나 정전협정 유지를 전제

2. 시기별 쌍방 제의내용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p>남북 평화 협정 제의 시기 (’54.6-’7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회복과 대남혁명노선의 포기 선행 강조 ○ ’74. 1 『남북불가침협정』 우선 체결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 ○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상호 무력 불행사』 약속을 제시 <p>* 평화협정과 불가침협정간 개념구분 불분명</p>
<p>미·북 평화 협정 제의 시기 (’74.3-’8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신뢰회복, 남북당사자해결, 현 정전협정 준수 등의 입장을 견지 ○ ’75.10 『휴전 당사국회의』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성격 ○ ’79. 7 한미공동으로 『3당국회담』 개최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과제로 남북대화의 촉진과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제시 <p>* 3당국회담 제안은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측의 실현 의지 미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의 실제당사자는 미·북한 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을 배제한채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 ○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불침범 서약 및 직접적 무력충돌 위험성 제거 △무력증강·군비경쟁 중지 및 무기·작전물자·군수물자 반입중지 △주한미군의 UN군 모자 제거 및 철수 △한반도내 외국군사기지·작전기지화 반대 등을 제시 <p>* 평화협정 체결후 미군철수로 입장 변화</p>

구 분	남 한	북 한
『3자회담』 제의 시기 ('84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협정 유지를 전제로 휴전관계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협상의제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와 유엔군 철수문제 제시 ○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대체 방안을 협의 입장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자 회담』 을 개최하여 남북간에는 불가침협정,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 ○ 미·북 평화협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의 종결의 법적 공식 선포 △정전의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문제를 제시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장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 수립 협상 제의 시기 ('944-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당사자간 협의·해결 △관련국의 협조와 뒷받침 △남북간 기존합의사항 존중 △현 정전협정 준수를 제시 ○ 남·북한,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개최 제의 - 4자회담 협상의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문제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문제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협정을 포괄하는 개념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미·북 협상 제의 - 정전기구 대체문제를 주된 협상 과제로 제기 ○ 평화협정 체결전 중간조치로서 미·북 『잠정협정』 체결과 미·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정전상태 관리 주장 *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정전관리로 입장 변화

3. 평화협정 관련 제의 일지

(1954-1996 현재)

일 자	남 한	일 자	북 한
		1954.6.15 제네바 정 치회담 북 한 의상 남일 연설	「남북간 협정」 체결 최초 주장 ○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 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 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 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해당한 협정을 남·북조선정부에 제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1962.10.23 최고인민 회의 제3 기 1차회 의 김일성 연설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 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 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 를 각각 10만 또는 그이하 로 축소하여야 함.
1973.3.15 남북조절 위원회 제 2차 회의 이후락 남 측 위원장 발언	신뢰구축 선행 입장 표명 ○ 군비축소문제나 또는 평화 협정문제를 논의하려면 신 뢰의 바탕위에서 폭력혁명 지령과 같은 그러한 행위 부터 먼저 중지해야 함.	1973.3.15 남북조절 위원회 제 2차 회의 박성철 북 측 위원장 대리 발언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군대 10만이하 감축, 외국 으로부터 작전장비 및 군수 물자반입 중지, 미군 철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 는 평화협정을 체결함.

일 자	남 한	일 자	북 한
<p>1974.1.18</p> <p>박정희 대 통령 연두 기자회견</p>	<p>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 남북이 서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 △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가지 골격이 포함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예방되고 평화는 유지됨. 	<p>1974.3.25</p> <p>최고인민 회의 제5 기 3차회 의 외교부 장 허담 보고</p>	<p>미·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옹당함. ○ 미국과의 평화협정에는 △ 상호 불침범 서약 및 직접적 무력충돌 위협성 제거 △ 무력증강·군비경쟁 중지 및 무기·작전장비·군수물자 반입중지 △ 주한미군의 UN군모자 제거 및 철수 △ 조선의 외국군사기지·작전기지화 반대 등이 포함되어야 함.

일 자	남 한	일 자	북 한
<p>1975.10.21</p> <p>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김동조 외무부장관 연설</p>	<p>휴전 당사국회의 개최 제의</p> <p>○ 우리 정부는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그 산하 유엔군 철수에 동의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휴전협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임.</p>		
<p>1979. 7. 1</p> <p>한미 공동성명</p>	<p>「3당국회담」 제의</p> <p>○ 남북대화의 촉진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로 공동결정하였음.</p>		
		<p>1979.7.10</p> <p>외교부 대변인 성명</p>	<p>남한의 ‘옵서버’ 참가 언급</p> <p>○ 미국이 정 요청한다면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옵서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임. 이렇게 하자고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져야 함.</p>

일 자	남 한	일 자	북 한
		<p>1984.1.10</p> <p>미국 정부와 상·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p>	<p>「3자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자회담에서는 미국과 우리 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와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봄. ○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p>1984. 2. 10</p> <p>진의중 국무총리 대 북서한</p>	<p>휴전 관계국회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임. 		
<p>1988.10.18</p> <p>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p>	<p>남북정상회담서 평화체제 대체방안 논의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 실현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함. 		

일 자	남 한	일 자	북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임. 	<p>1994.4.28</p> <p>외교부 성명</p>	<p>「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협상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함.
<p>1995.8.15</p> <p>김영삼 대 통령 광복 절 경축사</p>	<p>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함.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함.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함. 		

일 자	남 한	일 자	북 한
<p>1996.4.16</p> <p>한·미 공동 발표문</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음. ○ 이 회담은 항구적인 평화 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임. ○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 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p>1996.2.22</p> <p>외교부 대변인 담화</p>	<p style="text-align: center;">「잠정협정」 체결 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잠정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 잠정협정을 이행, 감독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 공동군사기구가 조직 운영되어야 함.

Ⅲ. 한반도 평화정착 기본원칙

- 김영삼대통령 광복절 경축사('95. 8. 15) -

나는 민족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첫 걸음은 신뢰구축이며, 신뢰는 서로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같은 기본원칙을 밝히면서 남과 북이 지금의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IV. 한·미 공동 발표문(1996. 4. 16)

- (1) 김영삼 한국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 4. 16 제주도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 (2)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공약을 다짐하고 한·미 안보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3) 양국 대통령은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희망을 피력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4)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

- (5) 김대통령은 한국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대표와 정부차원에서 만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양국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6) 이에 따라 양국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 회담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회담은 항구적 평화협정을 이룩하는 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것이다.
- (7) 양국 대통령은 4자회담에서 광범위한 긴장완화 조치도 토의될 수 있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8)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이와 같은 주도적 제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 하는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며, 김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ROK-U.S. Joint Announcement

Proposal to Hold a Four Party Meeting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96. 4. 16

1.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im Young Sam,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iam J. Clinton, held a summit meeting at Cheju Island, Korea on April 16, 1996. They had an in-depth exchange of views regarding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n ways to promote dialog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President Clinton pledged the steadfast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affirmed the strength of the U.S. -Korea security alliance. Both Presidents agreed that the present Armistice arrangement should be maintained until it is succeeded by a permanent peace agreement.
3. The two Presidents expressed their shared desire to foster a stabl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ensions remain high. They agreed to work positively and with an open mind to encourage a process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4. The two Presidents confirmed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establishment of a stabl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task of the Korean people. Both Presidents agreed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take the lead in a renewed search for a permanent peace arrangement, and that separat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on peace-related issues can not be considered.
5. President Kim affirmed the Republic of Korea is willing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at the governmental level with representatives of the DPRK. President Clinton affirmed that the U.S. is prepared to play an active and cooperative role in support of this effort. Both Presidents agreed that China's cooperation would be extremely helpful.
6. Accordingly, the two Presidents proposed to convene a Four Party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possible and without preconditions. The purpose would be to initiate a process aimed at achieving a permanent peace agreement.
7. The two Presidents agreed that this peace process also should address a wide range of tension reduction measures.
8. President Clinton praised the Republic of Korea initiative as a positive and important step in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Kim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continued American support.

V. 4자회담 제의관련 북한 및 주요국 반응

1. 북한 반응

일 자	내 용
'96. 4. 18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제의 “검토중”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6일 미 합중국 대통령 클린턴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과정을 개시하기 위해 조선의 북과 남,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음. ○ 그의 제안은 이 이상 더 구체화된 것이 없음. 원래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토의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측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4자회담 제안을 내놓았는지 우리로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명백히 안겨오지 않음. ○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조건에서 거덜이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긴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임. ○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로 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오래전부터 주요하게 제기해 오고 있음. 4자회담 제안이 조선정전협정의 기본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협정을 맺으려는데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일임.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 및 화해와 협력에 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그 문건이 세상에 발표되었음. 문제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자들 때문에 북남대화가 중단된 데 있음. ○ 4자회담 제안이 이러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지 하는 것 역시 알 수 없는 일임. 우리는 어쨌든 지금 미국측의 제안에 모종의 다른 기도가 깔려있지 않은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따져보고 있는 중임. 현시점에서는 이이상 더 논평하기 힘들.
<p>'96. 4. 26 중앙통신 보도</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한국참여 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 주구의 존재방식은 상전에 대한 구걸과 아부 아첨임. 남조선 괴뢰들이 놀아나는 구역질나는 행동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음. ○ 지난 4. 16일 김 〇 〇 괴뢰는 일본으로 가던중 잠깐 남조선에 들린 미국 대통령에게 갖은 아첨과 구걸질을 다해 그로부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안전담보 공약이라는 것을 받아냈음. 그런데 웃지못할 광대극은 지금 남조선 괴뢰들이 이것을 두고 최상의 혜택이나 받은 듯이 벽적 떠들어 대고 있는 것임. ○ 참으로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에서 상전의 웃자락에 매달려 간신히 연명해가는 남조선 괴뢰들만이 연출할 수 있는 정치만화가 아닐 수 없음. 미국의 안전담보 공약이란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틀어쥐고 있겠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최상의 혜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김 〇 〇 일당처럼 가련한 식민지 괴뢰는 아마 역사에 없었을 것임.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03 344 1390 645">○ 외신들이 남조선 괴뢰들이 노는 꼴을 두고 미국이 없이는 순간도 살아가지 못하는 식민지 주구의 추태라고 비웃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 남조선 괴뢰들은 추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또다시 저들이야말로 외세에 매달려 식민지 주구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할 것만 꾀하는 매국역적의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음. <li data-bbox="403 719 1390 1019">○ 가관인 것은 이렇게 가련한 처지에 있는 김 〇 〇 괴뢰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 끼어들어 보려고 양탈을 부리고 있는 것임. 김 〇 〇 은 이번에 미국 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졸졸 따라 외우며 그무슨 회담이 어찌고 저찌고 했는데 이것부터가 앓을 자리, 설 자리도 가려보지 못하는 가소로운 처사임. <li data-bbox="403 1093 1390 1393">○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로 말한다면 그것은 정전협정체계의 실제적 당사자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만 토의 결정되어야 할 문제임. 정전협정체계를 결사반대하고 정전협정에 서명조차하지 않은 남조선 괴뢰들이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임. 더욱이 김 〇 〇 일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꼬물만큼도 안중에 없는 사대매국노의 무리임. <li data-bbox="403 1467 1390 1767">○ 그들은 민족을 외세에 파는 한이 있어도 집권욕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추악한 민족반역자들임. 김 〇 〇 일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몰아온 통일의 악랄한 원수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조성한 것도 김 〇 〇 일당이며 이 시각도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전쟁광신자도 김 〇 〇 일당임.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한갓 식민지 괴뢰에 불과한 이런 민족반역자·사대매국노와 마주앉아 나라의 평화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음. 김 0 0 일당은 평화보장문제요, 뭐요 하며 떠들기전에 가련한 제 처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임.
<p>'96. 5. 7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관련 “설명” 대미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월 16일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4자회담을 진행할 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시기와 현실성 여부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 이것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나가려는 우리의 신중한 고려로부터 출발한 것임. 남조선 당국자들의 전례없는 북침전쟁연습소동과 이를 적극 뒷받침한 미국의 호전계층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최근 조선반도에 전쟁을 예고하는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 ○ 우리 인민군대는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주동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음. 특히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이 완충지대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북침을 위한 새로운 공격출발진지로 전변됨에 따라 우리 인민군대는 정전협정에 규제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음.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03 331 1390 577">○ 미국의 4자회담 제안은 바로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발표되었음. 우리는 미국이 내놓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을 명백히 파악하며 거기에 모종의 다른 기도가 깔려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러한 제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하여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즉시 요구하였음. <li data-bbox="403 645 1390 992">○ 4자회담 제안이 진실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요구대로 제안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공식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하여 날이 갈수록 이 제안에 대한 우리의 의심은 더 커가고 있음. <li data-bbox="403 1059 1390 1350">○ 우리가 지난 시기 시종일관 주장한 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사이에 토의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더욱이 거덜이 난 현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에서 지금과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실정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음. <li data-bbox="403 1417 1390 1664">○ 그러나 4자회담 제안은 우리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려 하는지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음.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그 사이 적지 않은 시일이 무뎠하게 흘러가기는 했지만 인내성과 자제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미국측으로부터 이러한 설명이 있기를 좀더 기다려 보고자 함. <li data-bbox="403 1731 1390 1877">○ 지금 일부 나라들이 4자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그에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더러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등 구구한 말들을 내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사태의 복잡성만을 더해줄 뿐임.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제안을 지지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하는 것은 마땅히 주인인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 어느 3자가 혼시한다고 하여 되고 안될 그러한 문제가 아님. 달고 쓴 것은 우리가 맛을 보고 판별할 것임.
<p>'96. 5. 24 노동신문 논평</p>	<p style="text-align: center;">4자회담 “공동설명회” 거부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 13일과 14일에 제주도에서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차관 보급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4자회담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과 대북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함. ○ 협의회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북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조·미, 조·일관계 개선보다 북남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경제제재 완화에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양탈을 부렸음. 외신들은 미국과 일본이 괴뢰들의 이러한 간청을 무시해 버렸다고 하면서 이번 제주도 협의회에서는 북조선에 대한 공동전략이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남조선이 북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동상이몽하고 있다고 평하였음. ○ 제주도 협의회라는데서 남조선 괴뢰들이 놀아댄 꼴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음. 아무런 정치적 자주성도 실권도 없는 식민지 주구인 것으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축에 들 자격도 명분도 없는 자들이 마치도 4자회담 문제에서 결정권이나 가지고 있는 듯이 주제넘게 횡설수설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4자회담에 응해야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역겨운 소리를 한 것은 실로 가소롭고 어처구니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음.

일 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뢰들은 큰물피해로 일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동족에 대한 국제적 인도주의적 지원문제를 4자회담 제안과 결부시킴으로써 그 제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크게 해주었음. ○ 더욱이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미, 조·일 관계개선보다 북남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세계 도처를 싸다니면서 4자회담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놀음을 하고 있는데 북남사이에 대화를 하고 그 무슨 회담을 하는 것마저 자주적 입장을 떠나 남에게 청탁해서 하겠다는 것은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될 것이 없음. ○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이번 제주도협의회에서 4자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이 공동설명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임. 원래 앉을 자리 설자리도 가리지 못하는 남조선 통치배들이지만 이번에도 코를 잘못 들이밀려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과정을 개시하기 위한 4자회담을 제기해 왔음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명백히 파악하며 거기에 모종의 다른 기도가 깔려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러한 제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하여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였음. ○ 그런데 남조선 괴뢰들이 마치도 우리가 저들의 말이나 들어보자고 하는 것처럼 중뿔나게 나서서 공동설명이요 뭐요 하며 돌아치는데 그야말로 분수에 맞지 않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 하겠음. 남조선 통치배들이란 아무런 주권도 자주권도 없고 권한도 능력도 없는 자들인지라 우리는 그들에게서 들을 것도 들어볼 것도 없음.

일 자	내 용
	<p>○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여기저기 빼칠 데 안 빼칠 데 가리지 못하고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밀며 나라의 평화보장에 훼방을 놓는 무례한 행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다시한번 경고함.</p> <p>남조선 통치배들은 미국이 내놓은 4자회담 문제를 두고 당치 않은 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 있는 편이 나을 것임.</p>

2. 美·日·中·러 반응

가. 미 국

일 자	내 용
'96. 4. 16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 구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 특히 러시아·일본 등과도 이미 협의를 거쳤음.
'96. 4. 25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해 북·미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조선중앙통신의 주장을 북측의 공식반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북한외교부의 성명은 고무적이었음.
'96. 5. 7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4자회담에 관한 추가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음. ○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간을 줄 것이며 추가 회동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할 것임.
'96. 5. 14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 뉴스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북한을 4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식량문제를 징계조치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 ○ 한국을 배제한채 미·북간 대화채널을 구축하는데 동의치 않을 것이며 이 대화에는 서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임.

일 자	내 용
'96. 5. 8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 기 자회견(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은 결코 계약이 아닌 진실한 제의이며 북한이 희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위해 기존의 억제력을 넘어서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하나가 현재 이행되고 있는 미·북한 제네바 합의임. ○ 남·북한은 양측의 중요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잠정적이며 부수적인 협정들(interim and side arrangements)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96. 5. 29 니컬러스 번스 국무부 대변인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이제까지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으며, 북한이 바란다면 조건없이 여하한 예비단계의 대화도 가질 준비가 되어있음.
'96. 5. 29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 방북 결과 기자회견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에 4자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였으나 뚜렷한 반응은 없었음. ○ 북한 당국은 식량지원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속에서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음.

나. 일 본

일 자	내 용
'96. 4. 16 하시모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정상외 제의한 4자회담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의의를 가지는 이니셔티브로서 이를 환영함.

일 자	내 용
타로 총리 환영 논평	○ 4자회담이 실현돼 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이 촉진되기를 희망하며 북한은 이 제의를 지체없이 수락, 대화의 자리에 나설 것을 기대함.
'96. 5. 20 日 연립여당 결정	○ 日 연립여당은 5.27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종혁 아·태 부위원장)의 방일 문제를 북측이 4자회담 수용을 명확히 하는 조건으로 허용방침을 정하였음. * 결국 방일문제는 무산

다. 중 국

일 자	내 용
'96. 4. 16 沈國放 외교 부 대변인 논평	○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관계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
'96. 4. 18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 4자회담 관련 북한과 한·미간에 회담의 방식 및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으며 이는 관련당사국들이 협상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바라며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임을 거듭 밝힘.
'96. 4. 23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 4자회담 관련 남·북한이 그들 나름의 상황에 의거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함.

라. 러시아

일 자	내 용
'96. 4. 15 알렉산드르 파노프 외무 차관 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상황은 양자간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모든 관련 당사자의 참여아래 해결을 모색해야 될 것임. ○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함께 미·러·일·중 및 유엔과 IAEA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의 개최를 거듭 촉구함.
'96. 5. 7 예브게니 프 리마코프 외 무장관-孔魯 明 외무장관 회담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전환에 러시아가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음. ○ 한반도 문제 해결관련 유엔 및 4강을 포함하는 다자간 국제회의 소집 입장은 불변이나,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유지나 평화협정 체결에는 협조할 것임.